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장현산업(서성열) ② (주)한맥기술(이경훈) ③ (주)피티씨(이종관) ④ (주)삼안(최동식) ⑤ 한라산업개발(주)(최영수)

나. 전화번호 : ① 02-2141-7428 ② 02-2141-7344 ③ 02-2141-7336 ④ 02-6488-8345 ⑤ 02-2047-5120

2. 명칭 : 확대머리를 갖는 단일 강봉을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Pre-Deck 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바닥판에 균열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한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확대머리(Button Head)를 갖는 단일 강봉과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단부에 설치된 정착장치로 강선 단부 전달 길이 구간에 발생하는 프리스트레스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제성 향상과 균열억제 효과를 갖도록 하고 프리캐스트 패널 설치후에는 정착 장치에 나사산을 갖는 철근 또는 볼트를 체결하여 현장 타설부에 연장 정착시킴으로서 정착성능을 향상하여 프리캐스트 바닥판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판이 일체 거동을 하도록 하는 균열발생이 억제된 PSC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범위>

확대머리(Button Head)를 갖는 단일 강봉과 정착장치를 이용하여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장하여 정착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소방청공고제2018-33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소 방 청 장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등으로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소방장비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기 등 절차(안 제2조~제4조)

- 1)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
- 2) 시·도지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과 함께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
- 3)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 소방청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변경을 요구
- 4)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